

# 예산총칙

2026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812,162,346	24,364,870
일반회계	698,178,727	20,945,362
특별회계	113,983,619	3,419,509
공기업특별회계	93,712,258	2,811,368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4,823,568	744,707
하수도사업특별회계	68,888,690	2,066,661
기타특별회계	20,271,361	608,141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328,664	39,86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493,371	14,801
주차장특별회계	2,246,750	67,403
수질개선특별회계	16,202,576	486,077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서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계속비 사업은 별첨 "계속비 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331,653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35,9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